

공공재정환수법 핵심내용



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,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.

부정이익의
환수

+

최대 5배의
제재부가금
부과

+

고액부정청구등
행위자
명단공표

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,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"안전하게"
신고자 보호

+

"세상을 바꾸는 용기"
신고자 보상·포상



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

신고상담

국번없이 **110**번 또는 **1398**번

신고방법

- 인터넷**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
- 방문·우편** 국민권익위원회
(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곡5로 20, 청부세종청사 7-2동)
정부합동민원센터
(서울특별시 중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둘청사 별관)
- 이메일** clean1398@korea.kr
- F A X** 044-200-7972

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



공공재정환수법

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

공공기관
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사·도교육청, 「공공기관운영법」상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, 각급 국·공립학교

공공재정

공공기관이 조성·취득하거나 관리·처분·사용하는 금품 등

공공재정지급금

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,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

부정청구 등

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 외 사용, 오지급

부정이익

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 등

공공재정지급금이란?

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



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



그 밖에 상당한
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
제공되는 금품 등

부정청구의 유형 [법 제2조제6호]

허위청구 (과태)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과다청구 (과태)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
목적 외 사용 (과태)

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제인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

오지급 (과태)

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공공재정지급금 환수-제재부과금 부과

부정이익의 환수

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**법 제6조**



부정이익의
환수



이자
※ 연 2.1%

제재부가금 부과

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 부과
법 제10조

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 부과
법 제10조

허위청구



부정이익 금액의 **×5**

과다청구



부정이익 금액의 **×3**

목적 외 사용



부정이익 금액의 **×2**

명단 공표

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**법 제16조**

“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”란?

-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,
- ② 부정이익 금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자

예시 2023년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



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신고자 보호

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**법 제19조**

신분보장 등

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,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
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, 전직,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

경제적·형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

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,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·허가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

신변보호조치

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
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
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 보상금·포상금 지급

보상금 지급 신청 **법 제25조제1항**

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부정이익 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포상금 지급 **법 제25조제2항**

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보상금의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